- 牙兵을 중심으로 -

金 祥 玉\*

自 次

- I. 序 言
- Ⅱ. 濟州의 地方軍
- Ⅲ. 牙兵의 設置와 運營
- Ⅳ 牙兵의 改革과 補完第
- V. 結 訊

# I. 序 言

濟州島는 朝廷에서 멀리 떨어진 海島로 東西에 倭와 中國이 위치하고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漂流船과 異樣船의 출몰이 많아 지역 방어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물론 제주 지방의 방어를 위한 지방군이 있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 방어에 대한 대책은 허술한 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중앙의 경우에는 왜란을 기점으로 5군영이 설치되어 어느 정도의 방위 체제가 이루어졌으며, 지방에 있어서도 東伍軍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실 정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군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歩兵인 東伍軍 이외에 騎兵인 馬隊, 銃手兵인 牙兵과 別 牙兵 뿐만 아니라, 해안 방어의 요충지에는 防軍이 있었고, 각 邑城 및 鎭堡 에는 城丁軍과 留直軍이 배속되어 있었다.

<sup>\*</sup> 표선상고 교사

이러한 지방군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役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軍制에 관한 연구 활동은 많은 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연구 저서로는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韓國軍制史」 '와 車文燮의 「朝鮮時代軍制研究」' 라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中央軍과 東伍軍 위주로 한정되어 있거나, 당시의 붕당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제주 지방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本稿는 조선 후기 제주 지방 군대의 편성과 그 운영을 파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제주 지방군을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牙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東伍軍과 馬隊는 유사시 소집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일정한 시기에 點閱과 操鍊이 있을 뿐이며, 營內에 상주하면서 방어를 담당하는 군대가 아니었다. 城丁軍은 적이 침입 시에 邑城 또는 鎭城을 수비할 뿐, 春秋操鍊도 없었으며, 留直軍은 각 官衙와 果園 등의 노동부대였다. 곧 濟州防禦營에 있어서 營 또는 鎭堡에 상주하면서 방어에 대용한 군대는 防禦營 大將의 欄後兵인 牙兵과 해안 방어의 요충지에 설치된 防護所의 防軍이라 하겠다.

그래서, 本稿는 먼저 제주의 방어 대책과 군대의 종류를 概觀하고, 牙兵의 편성과 운영 및 폐단을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 Ⅱ. 濟州의 地方軍

조선 후기 중앙 정부의 제주 방어에 대한 일면을 『宜祖實錄』에서 살펴보면,

주상이 별전에 납시어 周易을 講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묰.

"賊이 만약 제주를 빼앗아 의지한다면 말할 수 없게 된다. 근자에 비록 새로 及第한 100명을 보냈으나 어찌 방어에 보탬이 되겠는가! 제주는 비록 육지와 같이 쉽게 적이 쫓아 들어갈 수는 없지만, 戰艦 1,000여 척으로 港口를直犯하여 육지에 내려 營柵을 설치하고 장구히 지킬 계획을 갖는다면, 우리나라의 병력으로 어찌 敵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는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여 措置를 하여야 한다."

<sup>1)</sup> 육군사관학교 한국사연구실,「韓國軍制史」, 육군본부, 1968.

<sup>2)</sup> 차문섭, 「朝鮮時代 軍制研究」, 단대출판부, 1982.

라 하셨다. 유성룡이 대답하기를,

"비변사에서는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듣건대, 제주는 軍糧이 적다고 합니다. 전라도는 閑山島에 주력하므로 인해 오로지 제주를 잊고 있습니다. 적이만약 (濟州島에) 응거한다면, 단지 우리 나라가 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원(中國) 역시 航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적들은 모두 이러한 형세를 알고 있으니, 더욱 염려가 됩니다."라 하니, 주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는 수령을 선택하고, 군사를 첨가하며, 군량을 운반할 뿐이다. 이외에 어떤 조치할 일이 있겠는가!"

라 하셨다."

라 하여, 宜祖는 倭賊이 제주에 거점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特久策을 마련한다면, 우리 나라의 兵力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수령의 選定과 援兵 및 軍糧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을 뿐,특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濟州 삼읍 수령의 임명에 관한 「大典會通」의 기록은,

"國境地方 및 海岸地方의 守令은 文官 또는 武官으로 交流하여 任命한다. (…全羅道의 濟州・長興・威平・大静・旌義, ……)"\*\*

라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제주 목사의 경우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 수령이란 점에서 무관 출신이 많이 과견되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나타난 폐단도 많았 다. 무관 수령에 의한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 판관을 臺諫 또는 侍從臣 으로 임용하려는 논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57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

<sup>3) 「</sup>宣祖實錄」〈宣祖二十九年正月甲申〉

上御別殿講周易上日賊若奪據濟州則不可說也頃者雖送新及第一百 人亦何補於防禦故濟州雖不似陸地之易爲長驅賊以戰艦千 直犯港口而下陸設營柵爲久持計則我國兵力豈有抵敵之理乎備 邊可必已規劃措置矣成龍日備邊可則無措置之事矣聞濟州軍粮 乏小云而全羅道以致力於閉山島全忘濟州賊若雄據則非徒我國 不能抵當中原亦可一航風而到伊賊皆知此形勢尤用悶慮上日備 邊可擇守令添兵運粮而已此外有何措置之事乎

<sup>4)</sup> 한국고전국역위원회, 「國譯 大典會通」〈吏典, 外官職〉, P.88.

<sup>5)</sup> 무관 수령의 폐단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다.

① 비변사의 진언 가운데 "……세주는 대해 중에 있어 목사와 판관은 무관으로 아울러 보내는 것이 전례입니다. 방자하게 불법을 저질러도 조정에서는 알아볼 연고가 없어서, 온 도민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하의 교지를 받드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이후, 판관은 대관과 시종인으로 특별히 골라서 보냄이 어떻습니까?"라 하였으며,(宣祖 三十三年八月辛巳條)

여 해안 방어와 濟州島民에 대한 柔遠之道의 정사를 펴기 위하여 文蔭武(문 관, 음관, 무관)만이 아니라 儒生에 이르기까지 수령의 천거 법규에 구애됨이 없이.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천거하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 67

한편, 호남 원병의 지원 대책을 「宜祖實錄」에서 살펴보면,

전라도 순찰사 韓孝純의 장계에,

"제주 원병은 매년 3월초에 서울에 올라와 番을 서는 騎兵에서 500명을 덜어내어 들여보냈는데, 이로부터 상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壬辰(1592) 이후로는 군사의 수가 적어 200명을 減하여 단지 300명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丁酉(1597)에 들여보낸 후에 교체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면서 오래 防守하니, 편고의 원망을 조금도 면하지 못하여서 매우 축은합니다. 지금 沿海의 軍은 모두 舟節에 속하고, 內邑의 軍은 防禦使에 속하나 군인 수가 극히 적어서 모두 形成할 수 없어서, 제주 원병을 전례에 비추어 들여보내기는 그 형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라 하였다. 전에 들여보낸 사람들을 교대하는 일을 아울러서 該司로 하여금 定奪하여 시행할 일을 啓下하셨다. 비변사의 回啓에,

"제주에 들어가 방어하는 군사는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체하지 못하였으니, 과연 편고의 원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陸軍을 抽發하여 그수와 같이 換送하여야 하나, 지금은 방어가 급하여 교체할 때 소루함이 있을까 염려되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려 방어가 한가한 틈을 이용하

② 사간원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耽羅地域은 武夫의 利寵이 된지 오랩니다. 부호군 이곽이 제주에 있을 때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고, 헐값으로 양마를 매입하여 자기 것으로 점유할 뿐만 아니라 선물로 중여한 일이 잇달아 있었습니다."라 하였고,(仁祖 十二年九月丁卯條)

③ 제주 목사 沈樂珠는 상소에서, 壬辰倭亂 이후 30·40년여 년 동안 武臣을 많이 등용하였기 때문에, 微斂과 商行爲에 따는 弊端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濟州判官을 侍從臣으로 보낸 것을 아뢰었다.(正祖 十八年三月乙未錄)

<sup>6) 「</sup>清州啓錄」〈道光二十七年六月十二日〉

今月初八日到付備邊司關據本道觀察使關內節啓下數今五月十一日傳日年前儒武守令 別薦間或收用竟無實効蒐羅人材之本意果安在設況榮獎儒術大觀世敎之污隆小民命脈 專係守令之治否而前後飭便歸文具可勝嘆哉大政隔月選舉之方不宜蹈循常例林下讀書 躬篡行之士令道伯居留之臣勿拘前啣與儒生博采以聞文蔭武廉明著績人亦自廟堂收薦 於諸備堂及曾經時任藩臣竝與前薦合抄啓下銓曹以爲擇用之地事傳敎敎是置傳敎內辭 意奉客施行爲有矣特敎申飭若是鄭重其在對揚之道固當十分精白是在果見今政月只隔 舉行不容少緩關到卽時修薦單毋滯上送以爲抄啓之地宜當向事此亦中前啣與儒生別薦 卽爲狀聞次關是置有亦關內辭縁奉客施行向事關是白乎等以詳採坊曲博采物讓就其中 可合三人及儒生一人修單子上送于備邊司爲白乎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爾詮次善 啓向敎是事

여 들여보내는 일을 공문으로 보냄이 어떠합니까?" 라 하니, 아뢴 대로 허락하셨다."

라 하여, 서울에 入番하는 騎兵 중에서 500명을 차출하여 지원되어 왔으나, 壬辰倭亂 이후에는 300명으로 감원되었고, 宜祖 33년에는 騎兵에서 歩兵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 호남 원병도 광해군 12년(1620)에는 혁파되어<sup>8)</sup> 島民 에 의해 방어를 전담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의 濟州鎭管에 소속된 지방군의 종류를 「耽羅防營摠覧」에 의하여 군역별로 부류하여 보면.

- ① 원신역자로 편성된 경우는 대장의 欄後親兵인 牙兵과 防護所의 防軍, 봉 수대와 연대(烟臺)의 烽烟軍이며,
  - ② 원신역자와 겸역자로 편성된 馬隊,
- ③ 검역자로 편성되는 東伍軍, 留直軍, 城丁軍, 城門擧橋軍, 陪行軍, 大旗 幟軍, 差備軍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이들 각 부대를 지휘 체제와 공수의 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군과 잡색군으로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防禦使 또는 節制都尉의 지휘하에 있으면서 전투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를 정규군으로 보고, 읍성의 수비를 주 임무로하거나, 비전투 부대로서 지휘관을 수행 또는 관아·창고·과원에 배속되어수직하거나 잡역을 담당하는 경우는 잡색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주방어영의 정규군으로는 牙兵, 馬隊, 東伍軍과 1847년에 신설된 別牙兵, 각防護所의 防軍이라 할 수 있다.

『財羅防營捜覧』에 나타나는 군대를 정리하면 〈도 1〉과 같다.

<sup>7) 『</sup>宜祖實錄』〈宣祖 三十三年正月甲寅〉

全羅道巡察使韓孝純狀啓濟州援兵每年三月初京上番騎兵除出五百 名入送自是流來格例而壬辰以後軍士數小二百名減只三百名入送矣 丁酉入送之後不得交 至今仍留久戍偏苦之怨在所不免極爲矜憫而 今者沿海之軍則盡屬於舟師內邑之軍則盡屬於兵防禦使而軍數極少 皆不能成形則濟州援兵照例入送其勢極難何以爲之前入送人調回事 并令該司定奪施行事啓下備邊司回啓日濟州入防軍士已過三年尚不得交 果不無偏苦之寃所當抽發陸軍如數換送而目今防禦正急 代之際恐有疏虞之 息預爲裝束待秋成防歇入送事行移何如啓依允

<sup>8)</sup> 李源祚, 「耽羅誌草本」 p. 180. 湖南援兵三百八十三名每年春入來翌年替番分處觀德亭前左右衙廊以爲防秋之計 萬曆庚申革罷

大將:防禦使兼兵馬水軍節制使

### 〈도 1〉 제주 방어영의 군대

(제주 목사) 배행, 대기치, 차비군 中軍:節制都尉 諸鎖: 節制和尉 (세주 관관) (대정·정의 현감) 수송군 유직근 防護所:助防將 유직군 防護所: 助防將 [성정군 성정군 정문거교군 방군 봉연군 방군 봉연군

유직군

성정군

봉연군

유직군

성정군

봉연군

〈도 1〉의 馬隊는 左右馬隊로 各隊에는 5哨(전·좌·중·우·후초)로 이루어졌으며, 三邑의 除番假率,除番旗牌官,假吏 및 武定甲으로 구성되었다. 제번가솥과 제번기패는 매년 米 10斗률 賑恤庫에 납부하였으며,假吏 역시 본역이 있으면서 馬隊 또는 城丁軍을 겸하는 겸역자들이다. 다만 武學,定虜衛,甲士는 元身役者로 되어 있다. 또한 東伍軍은 설치 초기에는 3部 6司 30哨였으나, 1847년에 중설되어, 5部 12司 60哨로 편성되었으며,역시 除番軍官,假吏,除番旗牌官,使令三班 및 각계 각층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馬隊와 東伍軍은 春秋 點閱과 비상시에 동원되는 非常備軍으로 예비군적인 군대라 할 수있다. 1847년 李宜植 목사의 군제 개혁안에 의해 설치된 別牙兵은,

"작년 가을에 조사하여 얻은 漏丁이 7,035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1,371명은 양 읍 11초에 보충하도록 나누어주며, 本州 東伍에 20초를 더 설치하면 군제가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또, 섬사람들은 포 쏘는 솜씨가 가장 면밀합니다. 이들을 뽑아 10초를 정하여 별아병포수(別牙兵砲手)라 이름 짓고, 영장(領將) 1인은 전함조관(前即朝官) 중에서 임명하여 거느리게 하며, 매 조련에 일체

<sup>9) 「</sup>耽羅防營摠覧」〈都訓導所軍摠,持變廳,教鍊廳,武定甲廳,椽吏廳條〉參考

應點하도록 하십시오."10)

라 하여, 別牙兵 역시 각계 각충의 사람들 중에서 사격을 잘하는 자를 선발하여 10초로 편성한 군대이며, 前啣朝官을 領將으로 임명'''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別牙兵 역시 겸역자들로써 營內에 상주하는 상비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어에 대비하는 데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2)

## Ⅲ. 牙兵의 設置와 運營

牙兵이란 本營 大將의 欄後親兵으로서, 摠戎・守禦廳뿐만 아니라 지방의 監營, 兵營, 水營에도 있었다. 지방의 各營에 소속된 牙兵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摠戎廳의 경우에는, 창설 당시 摠戎使 李曙가 각 읍에서 200근 이상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뽑아 牙兵을 구성하였다<sup>(3)</sup>고 한다. 이로 보아 牙兵은 精鋭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병의 설치는 당시 정치 세력들 간의 무력 기반으로 병권을 장악하려는 정세와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즉, 摠戎廳 소속의 군사들은 경기 지역의 주민들로 편성된 속오군이었다. 속오군은 일종의 예비적인 군대로 신속한 동원이 어려웠다. 이에,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필요성에서 본청에 입번하는 아병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濟州防禦營에 소속된 牙兵의 설치 연대는 자료의 한계로 파악할 수

<sup>10) 「</sup>濟州啓錄」〈道光二十七年六月初七日〉 昨秋漏丁查得爲七千三十六名就此一千三百七十一名充代於兩邑十 一哨劃付之 數本州東伍加設二十哨則軍制成樣且島人砲放最是精放 抄定十哨名以別牙兵砲 手領將一人以前啣朝官中差定領率每於燥鍊一 應點

<sup>11) 「</sup>濟州啓錄」〈光緒九年十一月初六日,褒貶條〉에 "別牙兵領將前僉知金基磐"이라 하여, 前僉知(정3품 당상관)이 임명되었으며, 『耽羅營事例』〈頒料式例〉에 "別牙兵領將丁未李等新設每朔料小米六斗"라 하여, 1847년에 別牙兵이 신설되었고, 別牙兵領將에게는 급료가 지급되었음이 나타난다.

<sup>12) 「</sup>濟州啓錄」〈同治七年六月二十六日〉 在前別牙兵之設額一千徒擁虚名終護備禦之實効故昨年春聚點之日就其中有銃善 放者從實 精選則應點爲二百名而山野行獵之徒終不如麾下鍊習之兵進退聽視素 昧方向是白遣

<sup>13) 「</sup>仁祖實錄」〈仁祖 8년 4월 己亥〉 "捷戎使李曙啓日臣於嚴輔軍兵團束之初欲爲選鋒之計每邑各抄 力能舉二百斤者 稱爲牙兵當加有恤且造紙甲大劒以爲奮擊之用今臣 膚命臨陣請抄其中百餘人以 率去上從之"

없으나,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의하면,

"本島에 2哨가 있었는데, 김여수(金汝水) 목사(1647~1649)와 이인(李墳) 목사(1667~1669) 때에 각각 1哨를 중설함에 따라 4哨가 이루어졌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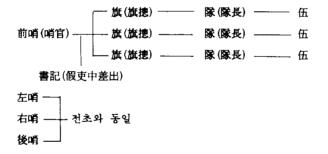
라 하여, 17세기 후반에 4초로 증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병의 설치 목적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軍隊로서 항상 濟州防禦營의 大將을 수행하는 欄後親兵으로 설치되었다. 즉, 防禦使인 목사가 내근하는 경우에는 營內에 대기하고, 營外로 출입할 때에는 欄後親兵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5)</sup> 이러한 牙兵의 편성 체제를「耽羅防營摠覧」에서 살펴보면,

"哨官四人兩朔一望入番書記四人假吏中差出兩朔一望入番牙兵十二旗軍捷四百九十六名每番一旗式分排十二番兩朔五日立番或逢點後番除各樣山行及工房納鹿角猪毛獐鹿猪皮質納軍器雉羽質納起軍則大將欄後親兵"<sup>161</sup>

라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 牙兵의 체제를 정리하면 〈도 2〉와 같다.

### 〈도 2〉 아병의 체제



즉, 每哨에는 哨官을 두었고, 各哨는 124명으로 조직되었다. 牙兵의 各哨는 3 旗로 나누고, 各旗마다 4隊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牙兵의 入防은 旗단위

<sup>14)</sup> 李灏祚, 「耽羅誌草本」 p.85. 牙兵廳本島二哨牧使金汝水時加設一哨李擴一哨合爲四哨欄後領將四人分六番輪 直

<sup>15)</sup> 李源祚,「耽羅錄」p. 292. 〈牙兵軍制釐革節目〉 防營之設置牙兵爲緩急備禦之用分番入防哨各置將坐起則排陣出入則欄後古人詰 戎之意……

<sup>16) 「</sup>耽羅防營摠覧」〈牙兵廳兵束〉

로 2개월에 5일씩 入番하며, 哨官은 소속 旗의 輸直 기간 동안인 15일간 領將 으로써 入直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牙兵의 구성은「耽羅防營摠覧」에 의하면, 元身役者인 農民들로 나타난다. <sup>17</sup> 한편, 入防하는 牙兵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 ① 초3일. 맑음. 화복에서 길을 떠났다. 10리 떨어져있다. 각 부서의 軍官들은 말을 타고 수십 인을 거느렸다. 欄後領將(牙兵의 哨官)은 甲胄를 갖추고 牙兵 일초를 거느려 護從하였다. 牙兵 4哨는 모두 農民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단지 1哨로 하여금 미리 와서 기다렸는데, 군장과 용모가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개 土俗에 將校를 중히 여겨, 軍伍에서 조금 우수한 자는 모두軍官으로 올려 임명된다. 牙兵과 防軍은 죽기를 각오하고 도피를 도모하는 까닭이다.
- ② 20일. 군병의 點閱로 獐項에 山纖을 나감은 옛날부터 있었던 例이다. 지난번에 다섯 領將(마대의 별장과 속오군의 천총)은 임명하였고, 삼 읍 各鎭의 歩軍은 중·좌·우의 三營에 속하며, 旗牌·假率·武定甲·吏奴 雜色은 左右 馬隊에 속한다. 하루 전 날 각 領將은 軍令을 받고, 劉錫에 군사를 모아 나아가서 山林 수십 리를 둘러 싸 각각 맡은 지역을 지켰다. 歩軍은 禽獸를 몰아내고, 馬軍은 劉锡 左右에 陣을 벌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牙兵 4哨는 獐項의 將臺 앞에 排陣하였다. 191
- ③ 本牙兵을 4哨로 나누니 윤번으로 입직하는 자는 매 5일에 30명이 되나, 혹 例에 따라 番米를 바치고, 혹은 屬人을 대신 세우니 闕伍가 많고, 사격술을 이하는 날이 없어서, 군량을 충족히 하고 병사를 정예화 함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달 외국 선박이 좋지에 국경을 범하여 사정 거리밖에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갑옷을 입고 기한 내에 이르지 못합니다. 입직하는

<sup>17) 『</sup>耽羅防營捷覧』 〈都訓導所軍捜條〉에 "牙兵五百三十二名元身役" 이라 하였고, 李源祚의 「耽羅錄」에는 "牙兵四哨多農民云" 이라 하였다.

<sup>18)</sup> 李源祚, 「耽羅錄」 p. 37. 初三日晴自禾北離發距十里各色軍官騎從者數十人欄後領將具甲胄率 牙兵一哨 護從牙兵四哨多農民云故只令一哨等待而軍裝身手全不成樣 盖土俗重校軍伍之 稍優者皆陞差軍官牙兵放軍則抵死謀避故也

<sup>19)</sup> 李源祚,「耽羅錄」p. 344. 二十日因軍兵點閱行山獵於獐項古例也前期差出五領將三邑各鎮步軍屬 之中左右三營旗牌假率武定甲吏奴雜色屬之左右馬隊前一日各領將受軍 令出去聚軍於獵場環山林數十里各守信地步軍驅禽獸而下馬軍列陳於獵 場左右使不得放逸牙兵四哨陳於獐項將臺之前

본병은 수가 거의 없고, 하는 일없이 적을 구경만 합니다. 수륙 지척의 거리이나 한발의 총알도 쏘지 못하고 갔다 돌아옵니다. 방어의 실책을 몹시 애석하게 여겨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sup>20)</sup>

라 하였다. 이 세 기록을 통하여 牙兵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은 신임 李源祚 목사가 부임하는 날 牙兵 1개 哨가 군장을 갖추고 화북진에서 護從을 대기하고 있는 내용이며,
- ②는 1842년 가을 聚點의 일부 내용으로, 보병인 東伍와 기병인 馬隊가 취점일 하루 전날 훈련을 위하여 獵場에 대기하고, 牙兵 4哨 역시 출동하여 지휘대 앞에 배진한 例이다.
- ③에서는 牙兵의 운영 과정에서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즉, 放番收米에 의해 입직하는 牙兵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習陣과 사격술을 연마하여 정예화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賊의 侵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실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에서 아병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

아병의 설치 목적이 방어영 대장의 난후 친병으로 항상 영장을 수행하며, 영내에 배진하여 대기하였다가 위급한 상황을 당하여서는 즉시 출동하는 상비 군이라 합 것이다. <sup>21)</sup>

# IV. 牙兵의 改革과 補完策

牙兵은 領將의 지휘하에 사격술을 익혀 精鋭化 함이 마땅하나, 농민인 원신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濟州島는 산간 지역의 경우 토질이 척박하고 뜨고 마르며, 해안의 토지 역시 염분이많아 작황이 좋은 편이 아니다. 특히, 보리 수확기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풍년

- 20) 「濟州啓錄」〈同治七年六月二十六日〉 本牙兵之分四哨輪番入直每五日爲三十名而或例捧番米或代立雇人闕伍居多 日 習放不可擬議於足食足兵之地是白在如中月前番舶之猝地犯境在外之善放 道里 稍遠未及 甲而 期入直之本兵額數無幾而徒然束手而玩寇水陸咫尺之 間未試一 九致使往歸者防禦之失策痛惜莫追是白乎矣
- 21) 牙兵은 元身役者인 農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2개월에 5일씩 윤번으로 입직하는 병사들로서, 군역자 개인으로 본다면, 장기간 營內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비군이라 할 수 없겠으나, 牙兵 전체로 생각하여 볼 때, 항상 영내에 상주·배진하는 군대이므로, 필자는 상비군이라 생각한다.

의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濟州啓錄」의 기록에 의하면, 흥년을 면한 평년작의 경우에 있어서도 舊還은 仍停되고, 乞戸와 尤尤甚은 白給 또는 秋還이 停退되는 일이 많다. <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 入番하는 軍役 외에 眞荏, 鹿茸價, 각종 군기에 쓰이는 물품의 납부와 수렵에의 동원은 이들 牙兵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放番收米로 인하여 入防하는 牙兵의 수가 5~6명에 불과하며, 臘日(冬至 뒤의 셋째 미일)에는 수렵에 동원되어 꿩, 토끼, 노루등을 바치게 하였고, 수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쌀을 거두는 규칙이 있어서 牙兵은 防軍, 船格과 함께 六苦役者가 되고 있다. <sup>23)</sup>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도피하거나 번미를 납부하여 모면하려 하였기 때문에, 아병 본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제주의 방어를 담당하는 常備軍隊로써의 牙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개혁 방안으로 시행되었던 사례를 李源祚의 「耽羅錄」에서 살펴보면,

- "一. 병무를 면밀하게 힘쓰지 않음이 많다. 4哨 12旗 500인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신분이 확실하며, 건강하고 사격을 잘하는 자를 택하여 正兵 180명을 삼고, 그 다음 180명을 택하여 保兵을 삼아 每正兵 1인에 保 1인을 주어 放番收米하게 하여 入防 때 糧米로 삼게 한다. 매번 30인씩 6번으로 나누어 기계를 갖추어 오래 대기하니, 군복 30벌은 먼저 官에서 만들어 주고, 入防할때 돌려 입게 한다. 그 나머지 140명은 平役에 부쳐 收米하여 應茸價 200량을 감당하고, 남은 쌀은 그 관청에 부쳐 春秋 軍點時 비용을 삼으며, 楊米 12石을 나누어주어 사격 試才 때에 賞料로 삼을 것
- 一. 이 제도를 만약 시행한다면 入防은 비록 수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수는 더하여지고 전보다 군사가 정예하다. 收米는 비록 옛 것에 의했다고 하나 사실은 병사에서 나와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는 규칙이다. 개혁을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 착취의 폐가 고쳐지며, 반드시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지되니 실로 좋아지게 된다. 다만 應其價는 영구히 없앨 수 없어 거리낌에 매이어 끝내 기분이 상쾌하지 못하다. 남겨두어 후에 오는 수령의 선정을 기다린다."<sup>241</sup>

라 하여, 正兵과 保人 및 平役者로 구분하고, 入防은 5일마다 30인씩 윤번으로 入直하도록 개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入番 牙兵의 糧米는 保人으로

<sup>22) 『</sup>濟州啓錄』〈同治六年十月十六日〉

<sup>23) 『</sup>耽羅防營摠覧』〈牙兵廳, 禮房庫〉의 李源祚, 『耽羅錄』 p. 193, p. 247. p. 292. 參照

<sup>24)</sup> 李源祚,『耽羅錄』 p. 292. 〈牙兵軍制釐革節目〉 一兵務精不務多四哨十二旗五百人中擇其有身手有根着壯健善放者爲正兵一百八

### 耽羅文化 16號

편성된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牙兵들이 부담할 應茸價는 평역자들이 부담하게 됨으로 牙兵들의 부담은 가벼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수령에 따라 牙兵의 役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는 가중되기도 하였다. 즉, 30여 년 후의 「潛州啓錄」에.

"本牙兵을 4硝로 나누니, 輪番으로 入直하는 者는 5일마다 30명이 되나, 흑 例에 따라 番米를 바치고, 흑은 雇人을 대신 세우니 関伍가 많고, 射擊術을 익히는 날이 없으니, 軍糧을 충족히 하고 병사를 精鋭化함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sup>25)</sup>

라 하였듯이, 다시 牙兵의 放番收米에 의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군의 운영이나 지방민의 부담은 수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어의 실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1868년에 別哨銃手가 설치되었다. 이 別哨銃手는 濟州防禦營 所屬의 吏校와 閑散人 중에서 민첩하고 용감한 102명을 선발하여, 3哨로 구성하였다. 別哨銃手는 各哨에 3旗를 두고, 旗마다 2개의 隊로 편성되었으며, 哨에는 哨官을, 旗에는 旗摠을, 隊에는 隊長을 두어서, 哨 단위로 매달 10일씩 輪直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常備軍隊였다. 특히, 이들 別哨銃手는 牙兵과는 달리 兼役者로써 매달 3두씩의 入番料米를 지급 받았다. 26)

十八擇其次一百八十八爲保兵每正兵一人給保一人使之放番收米以爲入防時粮米每番三十人分六番具器械長待而軍服三十領爲先自官造給以爲入防時輪着其餘一百四十人付之平役收米以當鹿茸價二百兩而餘剩米付之渠廳以爲春秋軍點時費用場米十二石劃給以爲善放試材時賞料事一此制若行則入防雖日減數而其實數加前而兵又精收米雖日依舊而其實出於兵而用之兵各處給代之規不待革而自革諸般誅求之弊不必禁而自禁實爲便好而但鹿茸價之不能永罷拘於嫌 終不清快留待後令尹之善政云

- 25) 본고 주 16) 참조.
- 26) 「唐州啓錄」〈同治七年六月二十六日〉

故臣營所屬吏校及城内閑散人中擇其精悍可用者一百二人名日別哨銃手以三十四名分作一哨各定旗捷隊長間十日輪入直每名所持鳥銃與藥丸依數備給課日試放常若對暴臨敵以爲緩急之用是白乎 入防牙兵三十名段置名下例納之番米一切革罷亦復舊規亦爲間五日入番使該領將一體習技而每於衙日應點之時與別銃手同場試閱取其得中之優等者拔例施賞目前勸激之方成爲羽翼足可自當一隊是白乎乃別哨銃手一百二名段元身役外奉公長待不可無軍需之支放而公 既爲不數區劃役策以賑還耗中入番料米三斗式逐名上下則每朔容入數爻合爲二十石六斗而一則在於軍制一則係是還捷恐難自下擅便茲以馳啓爲白去乎量宜措劃之方 令廟堂稟處爲白只爲是良爾詮次善啓向數是事

# Ⅳ. 結 語

濟州防禦營의 牙兵은 營將인 목사의 欄後親兵으로서, 항상 營內에 주둔하면서 위급에 대처하는 戰鬪部隊였다. 또한, 지방군의 주축을 이루었던 東伍軍이나, 馬隊와는 달리 元身役者인 農民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월에 5일씩 輪番으로 入防하는 府兵制에 의한 常備軍隊였다.

특히, 東伍軍과 馬隊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 發兵符에 의해 동원되거나, 春秋操鍊이 있는 경우에 소집이 있을 뿐이었다. 비상시 빠른 시간내에 동원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군대로서 牙兵이 설치된 것 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牙兵은 銃手兵으로서, 當該 領將의 지휘하에 射擊術을 익혀 위기에 대응하는 精鋭兵으로 양성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牙兵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연의 軍役 외에 眞荏과 鹿茸價의 납부, 狩獵에의 동원 등 그 부담이 막중하여, 도피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특히, 防番 收米에 의한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入防하는 군인의 수가 극히 적어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령에 따라 개혁 또는 보완책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항상 精鋭化된 欄後兵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1868년에 別哨銃手 3哨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적의 침입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어력 강화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牙兵이란 단순한 營將의 欄後親兵의 임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의 침입에 따른 방어에 있어서 馬隊와 東伍軍의 동원상의 문제점을 보완, 손쉽게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는 戰鬪部隊로서의 임무가 더 강하지 않았나 생 각된다.

### 耽羅文化 16號

## 〈참고 문헌〉

「濟州兵制烽臺摠錄」, 규장각도서 도서번호 4485.

### 「耽羅防營摠覧」

### 「耽羅營事例」

국사편찬위원회, 〈濟州啓錄〉, 『各司謄錄19』.

김석익, 〈耽羅紀年〉, 『心齋集Ⅱ」, 제주문화사, 1990.

육군사관학교 한국사연구실,「韓國軍制史」, 육군본부, 1968.

이원조, 「耽羅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이원조, 「耽羅誌草本外」,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이태진,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한국연구원, 1985.

차문섭, 「朝鮮時代 軍制研究」, 단대출판부, 1982.

한국고전국역위원회, 「國譯 大典會通」, 고려대학교출판부, 1960.